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3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24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제도 도입	4
2. 시설장비 일시적 사용중지 및 재사용 근거 마련	14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IV. 검토의견

1. 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 -----

· 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
-----검사업무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⑤ -----1회 이상

-----.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장비를 사용·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 관리자”라 함)는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정비·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등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고⁴⁾,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 주기로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⁵⁾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그런데 2020년 부산항 양곡부두에서 42년간 사용한 쉽 언로더(ship unloader)의 붐(boom)⁶⁾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장비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⁷⁾

4) 「항만법」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크레인의 손 역할을 하는 부분

□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여, 노후화된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⁸⁾ 등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잔존수명 및 안전등급 평가 등이 포함된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항만 내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시설장비 안전점검 제도 비교]

구 분	자체점검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개정안)	
대상	시설장비	시설장비*예외있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주기	주간점검: 주 1회 이상 분기점검: 분기 1회 이상	2년 주기	제작 후 20년 경과시	A·B등급: 6년 C등급: 4년 D등급: 2년 E등급: 사용중지
의무주체	시설장비관리자			
대행기관	자체 시행	검사대행기관 수행		
검사항목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정비·보수 필요 여부 등	구조·기계·전기 · 레일 분야 기본성능 검사	구조·기계·전기 · 레일 분야 기본성능 검사	구조·기계·전기 · 레일 분야 기본성능 검사
		-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	안전등급평가	안전등급평가
		-	잔존수명평가	-
점검 등 미수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조치 미이행	해당없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해양수산부

7) 뉴스1, 2020.12.20., “부산항 곡물 하역작업 크레인 붐 1개 무너져”

8)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초음파·방사선 등을 활용한 검사 등이 포함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용연한이 20년에서 25년 사이인 대형 시설장비의 약 25%가 이미 제조된지 20년을 초과하였고, 10년 후에는 75%가 20년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부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등을 의무화하여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형 시설장비 현황]

(단위: 기, %)

구 분	0~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년~	사용연한
계	299 (25.0%)	545 (49.4%)	179 (16.3%)	84 (6.6%)	28 (2.7%)	
컨테이너 크레인	52 (24.2%)	119 (55.3%)	34 (15.8%)	7 (3.3%)	3 (1.4%)	20년
트랜스퍼 크레인	181 (28.2%)	326 (50.8%)	103 (16.0%)	31 (4.8%)	1 (0.2%)	
다목적 크레인	9 (12.9%)	24 (34.3%)	13 (18.6%)	19 (27.1%)	5 (7.1%)	
쉽 언로더	45 (30.6%)	63 (42.9%)	20 (13.6%)	13 (8.8%)	6 (4.1%)	25년
쉽 로더	9 (19.6%)	9 (19.6%)	5 (10.9%)	12 (26.1%)	11 (23.9%)	
스태커 리클레이머	3 (20.0%)	4 (26.7%)	4 (26.7%)	2 (13.3%)	2 (13.3%)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등의 적용대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장비관리자가 정밀안전진단등 미수행 시 형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정밀안전진단등의 대상이 되면 현행법상의 정기검사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즉, 개정안의 취지가 노후화된 대형장비에

한정하여 정밀안전안전진단등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행법 상의 시설장비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른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 제38조에 의하여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현행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설장비 중 하나인 갑문⁹⁾ 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⁰⁾, 시설장비등은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9) (해양수산부_항만용어사전) 갑문 :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큰 항만, 하천, 운하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상시 가능하도록 설치한 항내의 수위의 고저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한 수문. 구조 형태는 상류 및 하류의 두 개의 갑문실과 그中间的 갑실(lock chamber)로 이루어져 고저 양쪽 수면의 경계부를 선박 통로로 연결하는 구조임.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항만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아울러, 용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데,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과의 차이가 개정안에서는 명확하지 않아 이후 적용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어를 일원화하거나 또는 차이에 따른 의미를 법률에 반영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시설장비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미이행 시 벌칙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예컨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11).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화되거나 대형의 시설장비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의 정밀안전진단등의 대상에 대하여 모든 시설장비가 아닌 ‘노후화된 대형 시설장비’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겠다는 설명임.

2. 시설장비 일시적 사용중지 및 재사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되,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설>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신설>	3.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중지하려는 경우
<신설>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 ----- -----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 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 ----- ----- ----- 하는 검사(제 31조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 기 간에는 제외한다)
4. (생략) <신설>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신설>	5. 사용재개검사: 사용이 일시중 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 기 전에 하는 검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상 시설장비관리자는 하역장비 등 시설장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고,¹²⁾ 시설장비의 제조

12) 「항만법」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
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 설치 또는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함.¹³⁾

□ 그런데 시설장비관리자가 먼지, 소음 등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검사의 경우 시설장비별 최대
200만원~49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시설장비별 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컨테이너크레인	2,000,000	47,000,000	28,000,000
트랜스퍼크레인	1,300,000	20,000,000	17,000,000
쉽로더	2,000,000	42,000,000	25,000,000
쉽언로더	2,000,000	42,000,000	25,000,000
스태커리클레이머	3,000,000	42,000,000	25,000,000
다목적크레인 (LLC, BTC)	1,500,000	40,000,000	24,000,000
스트래들캐리어	620,000	-	-
야드트랙터	490,000	-	-
벨트컨베이어	1,090,000	-	-
로딩암	490,000	-	-
탑승교	1,320,000	-	-

13) 「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개정안은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비 관리자가 시설장비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¹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재사용 시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장비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 하더라도 주간점검, 분기점검 등 시설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는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일시중지 대상기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사용이 중지되었던 시설장비의 사용재개 시 받아야 하는 재사용검사 결과 시에도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검사·수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1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장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신고를 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참 고 자 료

참 고

갑문시설 및 대형 시설장비

장 비	사 진	기 능
갑문시설		선박이 내항으로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선박 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위를 유지시키는 시설
컨테이너 크레인 (CC)		안벽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리거나 선박에 싣는 장비
트랜스퍼 크레인 (TC)		야적장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다목적 크레인 (BTC, LLC)	 	잡화화물의 하역, 선 적에 사용하는 장비
십 로더 (SL)		석탄, 곡물 등을 선적 하는 장비

십 언로더 (UL)		석탄, 곡물 등을 하역 하는 장비
스태커 리클라이머 (SR)		석탄, 곡물 등을 야드 에 적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